

공시송달공고

벌과금 강제집행(체납처분)을 위한 강제집행 예고장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,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6. 25.

전주지방검찰청

● 공시송달 내역

1. 제목 : 강제집행 예고장

2. 공고기간 : 2024. 6. 25. ~ 2024. 7. 9. (14일간)

3. 송달내역 : 아래 공시송달목록 참조

4. 문의사항 : 전주지방검찰 집행과 재산형집행계
(T. 063-259-4585)

공시송달목록

	구분	대상자	징수연도	금액(원)	반송사유	징제번호
1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김동호	2024	1,000,000	폐문부재 등	2024-3463
2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장우태	2024	70,000	폐문부재 등	2024-3471
3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이윤정	2024	25,000	폐문부재 등	2024-3699
4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정귀태	2024	9,000,000	폐문부재 등	2024-4669
5	강제집행예고장 (등기)	박진수	2024	1,000,000	폐문부재 등	2024-4670